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869
----------	------

2021. 12. 1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 제안경위

- 2021. 10. 15. 채인묵 의원 발의 (2021. 10. 20. 회부)

2. 제안이유

- 강력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범죄 취약지역 및 가구에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방범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위험요소를 줄임으로써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침입범죄와 방범시설에 대한 정의를 명시함(안 제2조)
-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사업에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함(안 제8조 제5호 신설)
- 시장은 침입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9조 신설)

4. 검토의견

- 범죄예방 관련¹⁾하여 서울시는 부서²⁾마다 각각 해당 예산사업³⁾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 조례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범죄예방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개정안은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건축물의 방범시설 설치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침입범죄와 방범시설의 정의를 규정하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포함하는 한편, 방범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임.
- 범죄예방 사업은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수행하고 있고 방범시설 설치사업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개정안은 건축물의 방범시설 설치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다만,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범죄취약지역 중 특히 범죄예방이 필요한 곳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운영(총 224개소, '21년 8월 기준)하고 있

1) 건축법 제53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시행중임

2) 범죄예방 관련 사업부서, 소관조례

소관부서	조례명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등
여성가족정책실	성평등 기본 조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스마트도시정책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주택정책실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등

3) 범죄예방 관련 2022년도 예산안 편성현황

소관부서	사업명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추진(30억원), 안심마을보안관(28억원) 등
여성가족정책실	안심귀가스카우트(38억 원), 모두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31억 원) 등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 서울 CCTV안전센터 운영(16억원), CCTV 및 비상벨 LED 안내판 설치(24억원) 등
자치경찰위원회	1인 여성가구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4억원), 한강공원 안전확보 강화방안(1천만원),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국비 20억원) 등
주택정책실	미편성

는 현황(붙임1)을 반영하여, 이 조례에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정의와 사업도 규정하여 해당 지역의 방법시설 설치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제2조(정의) <u><신설></u>	제2조(정의) 6. “ <u>범죄예방 강화구역</u> ”이란 서울특별시 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각종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히 강화된 범죄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3. <u>범죄취약지역</u>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3. (현행과 같음)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3. ----- <u>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u> ----- -----

- 개정안 제9조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종류에 ‘방법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방법문, 방법창,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 방법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 침입범죄 외에도 범죄의 유형이 다양한 점, 범죄취약지역 외에도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점을 고려하면 “침입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를 삭제하여 범죄의 종류와 범죄예방사업의 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제9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시장은 <u>침입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u> 방범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시장은 <u>방범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u> 지원할 수 있다.

- 정리하면, 개정안은 범죄취약지역 등의 건축물에 방범시설 설치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범죄예방 및 주민의 안전증진에 필요하다고 사료됨.

담당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지현
연락처	02-2180-8216
이메일	cjh1786@seoul.go.kr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 근거

-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1
-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를 규정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가)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설치·운영	①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사업 추진 ②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나)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진단	① 지역·건물의 범죄취약요소 현장진단 및 점검·관리 ② 범죄예방 강화구역 관리 등 범죄예방진단 전담 경찰관 운영
	다)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① 시기·장소별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②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시행

- 「서울특별시경찰청 지역·건축물 등에 대한 범죄예방진단규칙」 제8조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의결 후 시행 예정('21.12.)

제8조(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관리)

- ① 서울경찰청장등은 범죄예방진단 분석 결과와 지역별 범죄·사고 등 위해요인을 고려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서울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 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건축물·시설 등의 범죄예방디자인 적용과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 방범시설 설치, 순찰활동 강화, 유관기관 협업 등 강화된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유관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서울경찰청장등은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해소되었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 주민 등의 해제 요청 시 존속여부를 검토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21년 서울경찰청 추진 CPTED 관련 사업

○ 범죄예방 강화구역 대상 환경개선 사업 (국비, 446백만원)

- 서울경찰청 범죄예방 강화구역(214) 및 여성안심귀갓길(373) 대상 개별 개선 예산 배정(346백만원), 보안등·안내판 등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 동작서 사당1동 집중 환경개선(50백만원), △마포서 관내 여성1인가구 범죄예방시설(창문 잠금장치·문열림센서·홈CCTV 등) 지원(50백만원)

※ 서울경찰청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 배정액 : '19년 37백만 원 → '20년 370백만 원 → '21년 446백만 원 → '22년 434백만 원(국비보조금 형태 편성)

※ 범죄예방 강화구역 인프라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 (정의) 주민 불안이 높은 지역으로 특별히 강화된 범죄예방 대책이 요구되는 지역
- (사업내용) '범죄예방 강화구역'내에 조명, cctv, 출입통제장치 등 설치 지원
- (지정권자)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 (대상지역) 타 지역에 비해 강·절도 및 성범죄 발생이 빈번한 지역,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등

○ 범죄예방 강화구역 운영 현황

- 총 224개소로 자치구별로 최소 1개 ~ 최대 27개로 지정되어 운영

구분	범죄예방 강화구역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	여성안심구역
관리 이유	'09. 6. 쪽방촌 일대 강·절도 범죄 대응을 위해 지정	'10. 3. 김길태 사건 계기로 성범죄 대응위해 지정
개소	92개소	122개소
	224개소('21. 8월 기준)	

○ 서울경찰청 주거안심 치안종합계획 (비예산 사업)

- 5대 범죄(살인·강도·절도·성폭력·폭력) 증가율 대비 주거침입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안심 치안종합계획 시행, 주거안심구역* 지정 및 범죄예방 활동 집중 전개

*주거안심구역: 서울청 자체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①범죄통계(CSS, GeoPros 등) 분석 ②주민의견 수렴 ③지역특성 분석으로 주거침입 취약지역을 주거안심구역으로 지정·관리

- 서울청 내 51개의 주거안심구역 선정, 유관기관 협업으로 ▲범죄취약지 방범시설물 설치, ▲자율방범대, 안심마을보안관 등 합동순찰 등 추진

✓ **참고자료**

< '16~20년 5대 범죄 및 주거침입 발생 현황 > (단위 : 건)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16/20년 대비
5대 범죄	117,830	107,813	101,946	103,666	92,694	-25,136 (21.3%↓)
주거침입범죄	1,537	1,578	2,715	4,278	4,291	+2,754 (179%↑)

※ 5대범죄 : CSS범죄통계 시스템 / 주거침입범죄 : CSS 범죄통계시스템, 주거지 한정

□ 근거규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21.5.20 공포)

□ 자치경찰 사무

① 생활안전 분야

- 범죄예방, 지역 순찰, 주민 방범활동지원, 재난·재해시 주민보호, 사회질서 유지
-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② 교통활동 분야

- 교통법규 위반단속,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교통안전 교육·홍보
- 주민교통 활동지원, 교통관련 각종 허가·신고 등

③ 지역경비

- 다중운집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 경찰사무 구분



□ 서울시 주요 자치경찰 사무 (조례 별표1)

자치경찰사무(법률)		구체적인 수행사무 및 범위(조례)
생활 안전	1) 순찰 및 시설 운영	<u>범죄예방환경설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지원, 범죄취약요소 현장진단, 범죄예방 순찰 등</u>
	2) 주민참여 방법활동 지원·지도	자율방범대 등 주민참여 지역협의체 협업·지원·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 구조지원	재난우려·안전사고·재해·재난발생 시 긴급구조 지원, 해당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	아동·청소년·노인 등 학대예방, 성폭력 예방, 가정·학교폭력 대응, 피해자 보호기관 연계·지원, 학대예방인력 운영 등
	5) 사회질서의 유지 및 위반행위 지도·단속(단, 지자체 사무 제외)	경범죄 위반 단속, 기초질서 확립 홍보, 풍속업·사행행위 단속, 성매매 단속·예방
	6) 그 밖의 지역주민 생활안전 관련 사무	생활안전 관련 112 신고처리, 지하철경찰대, 한강경찰대, 관광경찰대, 유실물·분실물 관리, 응급구조대상자 지원, 주취자응급센터 운영지원
교통 활동	1)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교통법규 위반 단속·신고처리, 음주단속장비 관리
	2) 교통안전시설·교통단속장비 심의·설치·관리	교통안전시설·무인교통단속장비 심의·설치·관리·운영
	3)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4) 주민참여 교통활동 지원·지도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 구성·관리, 교통안전활동 홍보 등
	5) 교통관련 각종 허가 신고	안전기준 초과차량 허가처리, 도로공사·점용허가 조치,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관리 등
	6) 그 밖의 지역 내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교통사고·법규위반사항 112 신고처리, 운전면허 발급·갱신 등 관련 민원업무,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교통정체 관리, 교통안전대책 수립 등
지역 경비	다중운집행사	다중운집 행사장 주변 교통관리 및 안전활동 지원